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 관 의 장

공 보

제1461호 2023년 4월 18일(화)

고 시

○ 하천점용허가 고시 ····· 2

○ 속초 도시관리계획(도로: 소로1-15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3

입법예고

○ 속초시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조례안 입법예고 ····· 4

발행 : 시 민 소 통 담 당 관 (전화 : 639-3750, FAX : 639-2799)

속초시 고시 제2023 - 4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4월 14일

속 초 시 장

1. 하천의 명칭		청초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성명	(주)강일엔지니어링
	주소	강원도 강릉시 보래미하길 59(포남동)
3. 점용의 목적 및 개요	목적	지반조사
	개요	시추작업을 통한 지반조사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위치	강원도 속초시 교동 676-8
	면적	24㎡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2023. 4. 17.~2023. 4. 28. 중 1일

속초시 고시 제2023-47호

속초 도시관리계획(도로: 소로1-15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속초 도시관리계획(도로: 소로1-15호선)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속초시청 미래전략과(☎ 033-639-2447)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4월 18일

속 초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가. 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승인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1	15	10	국지도로	309	중로1-20 노학동1140도	중로2-2 노학동1-43도	일반도로	2022.12.30. (속초시 고시 제2022-210호))	
변경	소로	1	15	10	국지도로	309	중로1-20 노학동1140도	중로2-2 노학동1-43도	일반도로	2022.12.30. (속초시 고시 제2022-210호))	

나. 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사유서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소로1-15	소로1-15	○ 선형변경 - 연장 : 309m - 폭원 : 10m	○ 설온중학교 담장 저촉으로 인한 선형변경

다.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 실음생략

속초시 공고 제2023-416호

속초시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4월 18일

속 초 시 장

속초시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70세 이상)들에게 무료 이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어르신들의 이동권 확보 및 편의 증진을 도모하여 생활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버스 무료 이용 지원(안 제4조)

나. 버스를 무료로 이용하려는 어르신은 교통카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 금지(안 제5조부터제6조)

다. 운송사업자에게 버스 무료 이용에 따른 손실요금에 대한 청구서와 증빙을 받아 보전을 하여야 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5월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noopy0928@korea.kr

2) 주소 :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교통과(중앙동)

3) 팩스 : 033-633-5006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교통과(전화 : 033-639-21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속초시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속초시 조례 제 호

속초시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 보장과 편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에서 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2. “손실요금”이란 어르신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함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르신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등) ① 시장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버스의 무료 이용을 지원한다.

② 시가 어르신에게 제공하는 무료 이용 버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제5조(교통카드 발급신청 등) ① 버스를 무료로 이용하려는 어르신은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교통카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교통카드 발급 대상 요건 등을 확인하여 교통카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통카드의 발급 신청 절차, 발급 대상 기준 및 발급 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양도·대여 금지) ① 제5조에 따라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안 된다.

② 제5조에 따라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교통카드가 분실·멸실·훼손된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알려 교통카드가 부정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7조(지원중단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단시키고,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교통카드 발급자격을 상실(다른 지역 전출, 사망 등)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교통카드 사용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손실요금의 청구 등) ① 운송사업자는 버스 무료 이용에 따른 손실요금을 보전받으려는 경우에는 청구서와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손실요금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 및 정산결과에 따라 보전해야 할 손실요금이 확정되면 그 비용을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실요금의 청구 절차, 정산 방법 및 비용 보전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은 운송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손실요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9조(자료요구 등)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동장에게 지원대상자 현황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동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지역 전출 및 사망 등으로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손실요금의 산출 및 처리현황 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자나 운송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어르신 교통카드 발급신청서

신청인 (위임한 사람)	성 명		성 별	남 · 여	연락처	
	생년월일	년 월 일				
	주 소					
구 분	1. 신규 ( ) 2. 재발급 ( ) ※ 재발급 사유 : (재발급수수료 : 원)					
	1. 본인 ( ) 2. 대리인 ( ) ※ 대리인 위임장 작성(서식 하단)					

본인(대리인 포함)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자로부터 안내 받았음을 확인하였으며, 위와 같이 어르신 교통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위임한 사람) 성명 (서명 또는 인)

속초시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제공 등 동의서

	항 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교통카드 번호	교통카드 발급관리	사업의 폐지 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때까지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교통카드 번호	교통카드 사용자 등록	
	교통카드 사용내역	손실요금 지급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유기간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운송사업자	손실요금 청구	교통카드 사용내역	5년

	취급을 위탁 받는자 (수탁업체)	업무내용	보유기간
□ 개인정보 취급업무 위탁 내역	교통카드사	교통카드 발급 및 사용자 등록 사용정보 관리	사업의 폐지 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때까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취급업무 위탁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어르신 교통카드 이용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제3자 제공, 취급업무 위탁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신청인(위임한 사람) 성명 (서명 또는 인)

위 임 장

「속초시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조례」 제5조에 따른 교통카드 발급신청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위임합니다.

대리인 (위임받은 사람)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연락처		관 계	
	주 소			

※ 위임(대리신청) : 19세 이상(위임한 사람 신분증 및 도장, 위임받은 사람 신분증 지참)

※ 교통복지카드 부정 사용 시 카드사용이 중지됩니다.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조례명 : 속초시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지원조례안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44조(의견제출 및 처리)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